

2017년 정기이사회 회의록

- 총 제166차 -

【개최일시】 2017년 3월 3일(금) 16:00

【개최장소】 서울대 교구청 별관1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이사 정원 9명 중 참석이사 8명, 감사 1명

출석이사 : Bp.유경춘, Fr.정성환, 오혜경, 김진수, 정태호, 심점섭, 전재희, 김명근

출석감사 : 김기선

불참이사 : Fr.이원규

배 석 : Fr.황경원(사회사목국 국장), Fr.박경근(사회사목국 부국장),
Fr.조용철(법인 부회장), 법인사무국 담당관

- 【의안상정】** 제1호 의안. 감사보고서 승인 요청의 건
제2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처분 및 「정관」 기본재산목록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2016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4호 의안. 2017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5호 의안. 기금 사용 전환(안) 「호스피스 기금 및 노숙인 기금」 승인 요청의 건
제6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추인 승인 요청 건
제7호 의안. 법인 산하 수탁시설 「시립고덕양로원, 시립평화로운집」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제8호 의안. 미소금융중앙재단 복지사업자 사업계획(안)에 대한 승인 요청의 건
제9호 의안. 법인 「임원」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기타토의 및 보고사항/ 공지사항 / 폐회

□ 개회 정족수 보고 및 개회선언

오후 4시 의장인 유경춘 주교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정관 제19조 제2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정기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 의장 유경춘 인사 말씀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함께 자리해주신 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2016년도 법인의 사업수행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법인과 산하 직영·수탁시설의 2016년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심의 등 총9건의 상정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임원분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참석(배석)자 소개]

1. 사회사목국 국장 Fr.황경원(본회 신임이사 예정), [사회사목국 부국장] Fr.박경근
2. [법인 부회장 Fr.조용철] 지난 2월 1일 발표된 2017년 서울대교구 사제인사이동에 따라 구로2동성당에서 본 법인의 부회장으로 부임해 오신 Fr.조용철을 환영하며 법인이 세상속의 교회로서 나아가는 발걸음에 사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영의 인사소개를 마칩니다.

□ 전차 이사회이록 확정

의장은 참석이사에게 전차회의록에 대한 보완 수정할 부분의 유무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전차 회의록을 확정시키다.

의안심의

■ 제1호 의안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의장 유경춘] 제1호 의안인 법인 감사보고서 승인 건에 대하여 본 회 김기선 감사님께서 애써주신 점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란다.

[감사 김기선] 제1호 의안인 법인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연도의 2016년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인사항으로 각종 장부의 기장과 영수처리 장부의 잔고와 통장잔고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감사보고서의 보고를 마친다.

[의장 유경춘] 감사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법인 감사를 적법하게 수행해주신 점에 대하여 김기선 감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또는 특별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란다.

[제1호 의안인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원들이(이사 및 감사) 심의하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1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 및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에,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1호 의안인 감사보고서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2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처분 및 「정관」 기본재산 목록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의장 유경춘]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 및 「정관」 기본재산 목록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성환 상임이사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상임이사 정성환]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 및 「정관」 기본재산 목록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법인 기본재산처분인 사랑손 물건 처분(안)으로 지적장애인시설 사랑손주간보호센터 1개소, 그룹홈 2개소, 프로그램실이 있는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81-360(대지 622㎡/건물 지하 1층, 지상4층)에 대한 처분관련 건과 또한, 법인 정관상 기본재산목록 변경(안)으로 현금과 부동산 자산 가액에 변동이 생김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한 기본재산목록 변경(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 기본재산 「사랑손 물건」 처분(안)															
처분 대상	<p>■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81-360 (대지 622㎡ / 건물: 지하 1층, 지상4층 706.9㎡)</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시설명</th> <th>시설현황 (이용자/거주자)</th> <th>시설장</th> <th>종사자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지적장애인시설</td> <td>사랑손</td> <td>1 층 / 주간보호센터 (11명) 2 층 / 그룹홈 (연희네 4명) 3 층 / 그룹홈 (소라네 4명) 4 층 / 프로그램실</td> <td>최선화</td> <td>시설장의 5명</td> <td>-</td> </tr> </tbody> </table>					분야	시설명	시설현황 (이용자/거주자)	시설장	종사자수	비고	지적장애인시설	사랑손	1 층 / 주간보호센터 (11명) 2 층 / 그룹홈 (연희네 4명) 3 층 / 그룹홈 (소라네 4명) 4 층 / 프로그램실	최선화	시설장의 5명	-
	분야	시설명	시설현황 (이용자/거주자)	시설장	종사자수	비고											
지적장애인시설	사랑손	1 층 / 주간보호센터 (11명) 2 층 / 그룹홈 (연희네 4명) 3 층 / 그룹홈 (소라네 4명) 4 층 / 프로그램실	최선화	시설장의 5명	-												
<p>■ 서울시 사당동 189-2 도로 178㎡</p>																	
처분 사유	<p>1. 사랑손 물건의 소재한 그 주변 지역이 주택노후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본회는 재건축사업에서 사랑손 물건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였음.</p> <p>※ 재건축사업에서 제외 이유 - 현 위치가 도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 지역(송실대)의 쾌적하고 조용한 주변환경 등으로 지적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기 적합한 위치로 해당 시설장과 장애인부모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합설립에 반대하였음.</p> <p>2. 이에 조합측에서 본회의 요구(재건축사업에서 제외)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며 재건축관련법령에 따라 매도청구를 법원에 제소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그 판결금액에 따라 매매계약이 법률상 성립하여 사랑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p> <p>3. 해당 시설의 시설장과 장애인부모회에서는</p> <p>1) 다른 곳으로 시설을 이전할 시 한 곳에서 약 25년간 거주해온 지적장애인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의</p>																

- 변화로 받을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 2) 재건축사업구역외로 거주지 이전 시 장애인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점
 - 3) 판결금액으로는 주변지역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대체시설을 구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재건축사업구역내에 재정착하기로 하고 조합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4. 조합측에서는 사랑손이 재정착하는 경우 현재 규모의 건축물만 지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사랑손주간보호센터이외에 사랑손보호작업장(서초구 방배동 소재)도 지난 6년간 전세로 전전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함께 한 공간에서 정착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당초 한 건물에 있었던 그룹홈(연희네, 소라네) 2개를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을 위해 별도건물로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 등을 주장하여 약 3년에 걸쳐 조합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함.

※ 본회와 조합 및 시공사(롯데건설)간 계약 체결 내용

■ 재정착 조건 : 건물신축비 및 그룹홈 구입자금을 조합이 부담

- ① 대지 지분 : 약 429㎡(130평) 14억 3천만원 ※ 평당 1천1백만원(법원감정가액기준)
- ② 건물 규모 : 연면적 1,321㎡(400평) 지상 3층 / 19억 6천만원 ※ 평당 건축비 4백9십만원
- ③ 현금 지급 : 그룹홈 이전을 위한 2개 주택구입 9억원

■ 위 조건을 불이행할 시 위약금을 본 회에 지급

- 조합뿐만아니라 시공사측에서 위약금조로 80억원을 본회에 지급하기로 함

5. 향후 진행사항

- 1) 사랑손의 재정착과 관련한 조합측 의사결정과정 파악(총회결의 등)
 - ➡ 상고유지 여부 결정
- 2) 그룹홈 구입 및 주간보호센터 이주건물 탐색
 - ➡ 사전 이주건물 결정 후 이전(2017년 4-5월 예상)
- 3) 재정착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재건축 공사 진행일정에 따라 시공사측과 접촉 예정
 - ➡ 재정착건물 설계 등 논의와 감독관 선임 등

[참고 사항]

■ 매도소송결과(제1심, 항소심)

소재지	매도 금액(원)			비고
	제1심 판결액	항소심 판결액	증감액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81-360 대지 622㎡ 건물 706㎡	2,487,402,315원	2,402,697,620원	-84,704,695원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89-2 도로 178㎡	200,784,000원	344,430,000원	143,646,000원	-
합계	2,688,186,315원	2,747,127,620원	58,941,305원	-

	<p>■ 경과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1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2. 06. 조합설립인가 ⇒ 2012. 12. 제1심 매도청구소송제기 ⇒ 2014. 01. 사업시행인가 ⇒ 2015. 04. 제1심 매도청구소송 판결 ⇒ 2015. 05. 관리처분인가 ⇒ 현재 철거진행 중 ⇒ 2016. 11. 제2심 매도청구소송 판결 ⇒ 2016. 11. 제3심 매도청구소송 상소장 제출
--	--

2		법인 「정관」 중 - 기본재산목록 변경(안) 사항		
종 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총 자산가액 합계)	
현 금	0원	2,236,973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은 용산구 신계동 조합 청산에 따른 잔여금 입금. ■ 지난 2008년경 용산구 신계동지역의 재개발에 따라 당시 그 곳에 있던 베들레헴집(무료급식소)이 철거되고 아파트(32평형)와 현금 약 5억원 등 총 약10억원 보상을 받았었음. 	
부동산	신규 취득	<p>【 강일동 물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97 ■ 규 모 : 9,205.79㎡ (지하2층, 지상5층, 옥탑1층) 지하2층 2076.89㎡ 지하1층 2063.73㎡ 지상1층 1160.61㎡ 지상2층 1208.75㎡ 지상3층 897.33㎡ 지상4층 899.24㎡ 지상5층 899.24㎡ 옥탑1층 98.95㎡ ■ 평가액 : 13,482,765,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직영시설 강일성모노인요양원 신축 	
소 계 (1+2)		13,485,002,473원		
총 자산가액	31,075,938,489원	13,485,002,473원	44,560,940,962원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 및 정관 기본재산목록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원들이(이사 및 감사) 심의하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2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 및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에,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 및 정관 기본재산목록 변경(안)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 2016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의 건

[의장 유경춘] 제3호 의안인 2016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성환 상임이사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상임이사 정성환] 제3호 의안인 2016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외 총85개 시설에 대하여 본 이사회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정기 이사회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자료는 김기선 감사님과 심점섭 이사님의 사전 수검을 통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임.)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6년 추경예산(A)	2016년 집행액(B)	차액 (A-B)	달성율 (%)	2016년 추경예산(A)	2016년 집행액(B)	차액 (A-B)	달성율 (%)		
법 인	(1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6,590,559	6,949,307	-358,748	105.4	6,590,559	6,949,307	-358,748	105.4	19	
총 합	수법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의설	1,691,951	1,692,130	-179	100.0	1,691,951	1,692,130	-179	100.0	46	
		등촌7중합사회복지관 의설	2,194,410	2,177,100	17,310	99.2	2,194,410	2,177,100	17,310	99.2	49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의설	3,152,834	3,140,389	12,445	99.6	3,152,834	3,140,389	12,445	99.6	64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406,000	2,285,468	120,532	95.0	2,406,000	2,285,468	120,532	95.0	70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940,874	2,945,209	-4,335	100.1	2,940,874	2,945,209	-4,335	100.1	87	
		증곡종합사회복지관	2,037,245	1,925,298	111,947	94.5	2,037,245	1,925,298	111,967	94.5	91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설	3,501,840	3,473,182	28,658	99.2	3,501,840	3,473,182	28,658	99.2	99	
영유아	수법	가톨릭대안학교	828,614	809,136	19,478	97.6	828,614	809,136	19,478	97.6	107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344,624	377,363	-32,739	109.5	344,624	377,363	-32,739	109.5	115	
		해뜨는 집	261,628	258,133	3,495	98.7	261,628	258,133	3,495	98.7	117	
아 동	수법	셋별지역아동센터	292,842	293,981	-1,139	100.4	292,842	293,981	-1,139	100.4	122	
		솔바람복지센터	239,971	246,962	-6,991	102.9	239,971	246,962	-6,991	102.9	125	
		우리들의공부방	84,997	84,744	253	99.7	84,997	84,744	253	99.7	128	
청소년	(1개)	수	동선동청소년공부방	80,210	79,675	535	99.3	80,210	79,675	535	99.3	132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6년 추경예산(A)	2016년 집행액(B)	차액 (A-B)	달성율 (%)	2016년 추경예산(A)	2016년 집행액(B)	차액 (A-B)	달성율 (%)	
노 인 (22개)	수법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설	3,519,692	3,470,371	49,321	98.6	3,519,692	3,470,371	49,321	98.6	140
	수법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외설	3,028,864	3,008,247	20,617	99.3	3,028,864	3,008,247	20,617	99.3	145
	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외설	1,643,863	1,653,588	-9,725	100.6	1,643,863	1,653,588	-9,725	100.6	151
	수법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외설	2,855,033	2,854,449	584	100.0	2,855,033	2,854,449	584	100.0	159
	직	강일성모노인요양원 외설	1,843,253	1,813,762	29,491	98.4	1,843,253	1,813,762	29,491	98.4	165
	수법	남산실버복지센터	951,591	954,800	-3,209	100.3	951,591	954,800	-3,209	100.3	172
	수법	서초노인요양센터	5,098,353	5,037,514	60,839	98.8	5,098,353	5,037,514	60,839	98.8	193
	수법	시립고덕양로원	1,998,937	1,940,463	58,474	97.1	1,998,937	1,940,463	58,474	97.1	204
	수법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외설	2,623,362	2,608,260	15,102	99.4	2,623,362	2,608,260	15,102	99.4	209
	직	갈현동성당데이케어센터	376,640	394,977	-18,337	104.9	376,640	394,977	-18,337	104.9	218
	직	고척동성당데이케어센터	370,000	357,407	12,593	96.6	370,000	357,407	12,593	96.6	222
	직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	425,291	414,237	11,054	97.4	425,291	414,237	11,054	97.4	226
	직	금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384,551	371,670	12,881	96.7	384,551	371,670	12,881	96.7	230
	직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	411,143	407,416	3,727	99.1	411,143	407,416	3,727	99.1	234
	직	시흥4동성당데이케어센터	376,883	376,633	250	99.9	376,883	376,633	250	99.9	238
	직	신당동성당데이케어센터	441,316	452,718	-11,402	102.6	441,316	452,718	-11,402	102.6	243
	직	신림성모성당데이케어센터	435,939	412,901	23,038	94.7	435,939	412,901	23,038	94.7	249
	직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472,426	467,598	4,828	99.0	472,426	467,598	4,828	99.0	253
	직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412,744	430,249	-17,505	104.2	412,744	430,249	-17,505	104.2	257
	직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450,426	435,261	15,165	96.6	450,426	435,261	15,165	96.6	261
	직	혜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	534,463	525,371	9,092	98.3	534,463	525,371	9,092	98.3	267
	직	화곡본동성당데이케어센터	500,685	510,189	-9,504	101.9	500,685	510,189	-9,504	101.9	272
장애인 (37개)	수법	강서구직업재활센터	1,472,470	1,317,831	154,639	89.5	1,472,470	1,317,831	154,639	89.5	283
	직	꿈손장애인단기보호센터	327,689	329,035	-1,346	100.4	327,689	329,035	-1,346	100.4	288
	직	나자로의집공동생활가정	77,955	79,906	-1,951	102.5	77,955	79,906	-1,951	102.5	290
	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404,410	393,816	10,594	97.4	404,410	393,816	10,594	97.4	293
	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64,328	64,418	-90	100.1	64,328	64,418	-90	100.1	295
	직	다사랑공동생활가정	71,152	71,310	-158	100.2	71,152	71,310	-158	100.2	298
	직	다향공동생활가정	65,307	65,934	-627	101.0	65,307	65,934	-627	101.0	300
	직	두레네공동생활가정	61,196	60,891	305	99.5	61,196	60,891	305	99.5	302
	직	디딤자리	1,813,816	1,809,471	4,345	99.8	1,813,816	1,809,471	4,345	99.8	312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족 번 호
			2016년 추경예산(A)	2016년 집행액(B)	차액 (A-B)	달성율 (%)	2016년 추경예산(A)	2016년 집행액(B)	차액 (A-B)	달성율 (%)	
장애인	직	루치아공동생활가정	94,976	99,370	-4,394	104.6	94,976	99,370	-4,394	104.6	316
	직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	76,378	75,945	433	99.4	76,378	75,945	433	99.4	319
	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384,944	364,574	20,370	94.7	384,944	364,574	20,370	94.7	322
	직	바오로교실주간보호센터	188,788	189,051	-263	100.1	188,788	189,051	-263	100.1	326
	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64,553	64,672	-119	100.2	64,553	64,672	-119	100.2	328
	직	비둘기보호작업장	290,533	290,374	159	99.9	290,533	290,374	159	99.9	332
	직	비둘기주간보호시설	173,052	175,539	-2,487	101.4	173,052	175,539	-2,487	101.4	336
	직	사랑손보호작업장	534,827	496,894	37,933	92.9	534,827	496,894	37,933	92.9	339
	직	사랑손주간보호센터	218,383	208,176	10,207	95.3	218,383	208,176	10,207	95.3	347
	직	서로함께공동생활가정(신사)	71,330	60,885	10,445	85.4	71,330	60,885	10,445	85.4	350
	직	서로함께공동생활가정(창남)	75,816	67,733	8,083	89.3	75,816	67,733	8,083	89.3	353
	수법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1,610,105	1,525,736	84,369	94.8	1,610,105	1,525,736	84,369	94.8	357
	수법	서초구립한우리정분회센터	3,366,861	3,511,138	-144,277	104.3	3,366,861	3,511,138	-144,277	104.3	362
	수법	서초구립서리풀장애인이용센터	186,122	183,031	3,091	98.3	186,122	183,031	3,091	98.3	364
	직	성빈센트환경마을	948,044	1,093,937	-145,893	115.4	948,044	1,093,937	-145,893	115.4	367
	직	성지보호작업장	308,283	309,254	-971	100.3	308,283	309,254	-971	100.3	372
	직	소라네공동생활가정	69,030	69,066	-36	100.1	69,030	69,066	-36	100.1	374
	수법	송파위더스	323,977	278,905	45,072	86.1	323,977	278,905	45,072	86.1	377
	직	시립평화로운집	5,520,867	5,257,562	263,305	95.2	5,520,867	5,257,562	263,305	95.2	384
	직	신망애공동생활가정	61,197	62,741	-1,544	102.5	61,197	62,741	-1,544	102.5	387
	직	신망애의집	354,756	347,831	6,925	98.0	354,756	347,831	6,925	98.0	390
	직	연희네공동생활가정	50,731	51,525	-794	101.6	50,731	51,525	-794	101.6	393
	직	푸른보호작업장	220,500	215,730	4,770	97.8	220,500	215,730	4,770	97.8	395
직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62,860	62,920	-60	100.1	62,860	62,920	-60	100.1	397	
직	햇빛자리	205,498	208,805	-3,307	101.6	205,498	208,805	-3,307	101.6	401	
직	헬렌켈러의집공동생활가정	50,793	50,573	220	99.6	50,793	50,573	220	99.6	403	
직	헬렌켈러의집단기보호시설	261,194	260,906	288	99.9	261,194	260,906	288	99.9	408	
직	헬렌켈러의집주간보호시설	176,604	179,756	-3,152	101.8	176,604	179,756	-3,152	101.8	412	
여성 (5개)	직	마음자리	830,392	823,964	6,428	99.2	830,392	823,964	6,428	99.2	418
	직	벚꽃의집	320,693	330,550	-9,857	103.1	320,693	330,550	-9,857	103.1	420
	직	사랑의집	122,944	123,505	-561	100.5	122,944	123,505	-561	100.5	422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6년 추경예산(A)	2016년 집행액(B)	차액 (A-B)	달성율 (%)	2016년 추경예산(A)	2016년 집행액(B)	차액 (A-B)	달성율 (%)	
여 성	직	성 가 정 입 양 원	2,822,522	2,980,969	-158,447	105.6	2,822,522	2,980,969	-158,447	105.6	436
	직	화 해 의 집 섬 자 리	332,526	334,619	-2,093	100.6	332,526	334,619	-2,093	100.6	439
노숙인 (3개)	수법	서울시여성보호센터	2,751,800	2,779,881	-28,081	101.0	2,751,800	2,779,881	-28,081	101.0	449
	수법	시 립 은 평 의 마 을	9,646,764	9,614,685	32,079	99.7	9,646,764	9,614,685	32,079	99.7	452
	직	우 리 집 공 동 체	147,103	149,338	-2,235	101.5	147,103	149,338	-2,235	101.5	454
의 료 (3개)	수법	시 립 은 혜 로 운 집	2,621,247	2,620,262	985	100.0	2,621,247	2,620,262	985	100.0	466
	직	요 셉 의 원	11,908,817	12,283,481	-374,664	103.1	11,908,817	12,283,481	-374,664	103.1	469
	직	희 망 의 집	200,252	205,894	-5,642	102.8	200,252	205,894	-5,642	102.8	475
푸 드 (1개)	수법	성 북 푸 드 마 켓	206,324	208,423	-2,099	101.0	206,324	208,423	-2,099	101.0	482

[구분보기] 수법: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수: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직: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직: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의장 유경춘] 본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지를 묻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청하다.

[제3호 의안인 2016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원들이(이사 및 감사) 심의하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3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 및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에,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3호 의안인 2016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4호 의안 : 2017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의장 유경춘] 제4호 의안인 2017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성환 상임이사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상임이사 정성환] 제4호 의안인 2017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외 64개 시설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요청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정기이사회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 이하 자료는 김기선 감사님과 심점섭 이사님의 사전 수검을 통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임.)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7년 예산(A)	2017년1차 추경예산액 (B)	증감 (B-A)		2017년 예산(A)	2017년1차 추경예산액 (B)	증감 (B-A)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법 인 (1 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0,177,504	11,053,371	875,867	8.6	10,177,504	11,053,371	875,867	8.6	488
종 복 합 지 (7 개)	수법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외 설	1,601,267	1,726,080	124,813	7.8	1,601,267	1,726,080	124,813	7.8	489
	수법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외 설	1,982,300	2,058,310	76,010	3.8	1,982,300	2,058,310	76,010	3.8	490
	수법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외 설	3,119,378	3,290,262	170,884	5.5	3,119,378	3,290,262	170,884	5.5	495
	수법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350,500	2,393,500	43,000	1.8	2,350,500	2,393,500	43,000	1.8	499
	수법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754,697	3,049,473	294,776	10.7	2,754,697	3,049,473	294,776	10.7	500
	수법	중곡종합사회복지관	2,344,768	2,346,157	1,389	0.1	2,344,768	2,346,157	1,389	0.1	501
	수법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 설	3,493,908	3,577,355	83,447	2.4	3,493,908	3,577,355	83,447	2.4	502
영유아 (1 개)	수법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825,484	956,647	131,163	15.9	825,484	956,647	131,163	15.9	506
아 동 (1 개)	수	솔바람복지센터	176,547	261,200	84,653	47.9	176,547	261,200	84,653	47.9	507
	직	우리들의 공부방	238,688	234,496	-4,192	-1.8	238,688	234,496	-4,192	-1.8	508
노 인 (20 개)	수법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 설	3,392,120	3,274,139	-117,981	-3.5	3,392,120	3,274,139	-117,981	-3.5	509
	수법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외 설	2,887,256	3,240,798	353,542	12.2	2,887,256	3,240,798	353,542	12.2	511
	수법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외 설	1,771,066	1,809,607	38,541	2.2	1,771,066	1,809,607	38,541	2.2	513
	수법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외 설	2,863,482	3,088,258	224,776	7.8	2,863,482	3,088,258	224,776	7.8	515
	직	강일성모노인요양원	2,199,426	2,341,649	142,223	6.5	2,199,426	2,341,649	142,223	6.5	517
	수법	시립고덕양로원	1,952,275	2,075,839	123,564	6.3	1,952,275	2,075,839	123,564	6.3	518
	수법	남산실버복지센터	907,789	940,020	32,231	3.6	907,789	940,020	32,231	3.6	519
	수법	서초노인요양센터	5,166,126	5,223,165	57,039	1.1	5,166,126	5,223,165	57,039	1.1	520
노 인	수법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외 설	2,720,143	2,699,990	-20,153	-0.7	2,720,143	2,699,990	-20,153	-0.7	521
	직	고척동성당데이케어센터	360,000	360,000	0	0.0	360,000	360,000	0	0.0	523
	직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	412,129	403,364	-8,765	-2.1	412,129	403,364	-8,765	-2.1	524
	직	금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396,300	395,900	-400	-0.1	396,300	395,900	-400	-0.1	525
	직	시흥4동성당데이케어센터	357,569	366,154	8,585	2.4	357,569	366,154	8,585	2.4	526
	직	신당동성당데이케어센터	448,780	453,362	4,582	1.0	448,780	453,362	4,582	1.0	527
	직	신림성모성당데이케어센터	435,939	439,230	3,291	0.8	435,939	439,230	3,291	0.8	528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7년 예산(A)	2017년1차 추경예산액 (B)	증감 (B-A)		2017년 예산(A)	2017년1차 추경예산액 (B)	증감 (B-A)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노 인	직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464,216	479,067	14,851	3.2	464,216	479,067	14,851	3.2	529
	직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425,182	451,581	26,399	6.2	425,182	451,581	26,399	6.2	530
	직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443,254	432,651	-10,603	-2.4	443,254	432,651	-10,603	-2.4	531
	직	혜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	517,813	533,287	15,474	3.0	517,813	533,287	15,474	3.0	532
	직	회곡본동성당데이케어센터	482,308	490,000	7,692	1.6	482,308	490,000	7,692	1.6	533
장애인 (28개)	수법	강서구직업재활센터	1,650,632	1,933,374	282,742	17.1	1,650,632	1,933,374	282,742	17.1	534
	직	꿈손장애인단기보호센터	262,631	324,672	62,041	23.6	262,631	324,672	62,041	23.6	535
	직	나자로의집공동생활가정	80,044	82,367	2,323	2.9	80,044	82,367	2,323	2.9	536
	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366,332	383,973	17,641	4.8	366,332	383,973	17,641	4.8	537
	직	다 향 공 동 생 활 가 정	57,564	62,993	5,429	9.4	57,564	62,993	5,429	9.4	538
	직	디 덤 자 리	1,851,785	1,827,319	-24,466	-1.3	1,851,785	1,827,319	-24,466	-1.3	539
	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338,939	350,120	11,181	3.3	338,939	350,120	11,181	3.3	540
	직	바오로교실주간보호센터	207,486	220,094	12,608	6.1	207,486	220,094	12,608	6.1	541
	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66,443	67,785	1,342	2.0	66,443	67,785	1,342	2.0	542
	직	사 랑 손 보 호 작 업 장	519,342	523,358	4,016	0.8	519,342	523,358	4,016	0.8	543
	직	사 랑 손 주 간 보 호 센 터	221,281	223,096	1,815	0.8	221,281	223,096	1,815	0.8	544
	직	서로함께공동생활가정(신사)	74,600	70,623	-3,977	-5.3	74,600	70,623	-3,977	-5.3	545
	직	서로함께공동생활가정(창림)	79,666	76,678	-2,988	-3.8	79,666	76,678	-2,988	-3.8	546
	수법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1,647,796	1,723,672	75,876	4.6	1,647,796	1,723,672	75,876	4.6	547
	수법	서초구립한우리정분화센터	3,520,336	3,710,773	190,437	5.4	3,520,336	3,710,773	190,437	5.4	548
	수법	서초구립서리풀주간이용센터	192,024	197,366	5,342	2.8	192,024	197,366	5,342	2.8	549
	수법	서초구립한우리보호작업장	844,041	970,269	126,228	15.0	844,041	970,269	126,228	15.0	550
	수법	서초구립주간이용센터	157,166	164,387	7,221	4.6	157,166	164,387	7,221	4.6	551
	직	성 지 보 호 작 업 장	323,109	336,125	13,016	4.0	323,109	336,125	13,016	4.0	552
	수법	송 파 위 터 스	311,788	308,364	-3,424	-1.1	311,788	308,364	-3,424	-1.1	553
직	시 립 평 화 로 운 집	5,271,556	5,380,526	108,970	2.1	5,271,556	5,380,526	108,970	2.1	554	
직	신망애공동생활가정	60,066	77,824	17,758	29.6	60,066	77,824	17,758	29.6	555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7년 예산(A)	2017년1차 추경예산액(B)	증감 (B-A)		2017년 예산(A)	2017년1차 추경예산액(B)	증감 (B-A)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직	신 망 애 의 집	367,608	433,281	65,673	17.9	367,608	433,281	65,673	17.9	556
	직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64,331	67,594	3,263	5.1	64,331	67,594	3,263	5.1	557
	직	햇 빛 자 리	201,561	223,876	22,315	11.1	201,561	223,876	22,315	11.1	558
	직	헬렌켈러의집공동생활가정	50,349	53,478	3,129	6.2	50,349	53,478	3,129	6.2	559
	직	헬렌켈러의집단기보호시설	288,317	344,225	55,908	19.4	288,317	344,225	55,908	19.4	560
	직	헬렌켈러의집주간보호시설	201,703	212,462	10,759	5.3	201,703	212,462	10,759	5.3	561
노숙인	수법	서울시여성보호센터	2,726,934	2,801,597	74,663	2.7	2,726,934	2,801,597	74,663	2.7	562
(2개)	직	우 리 집 공 동 체	122,041	118,528	-3,513	-2.9	122,041	118,528	-3,513	-2.9	563
의 료	수법	시 립 은 혜 로 운 집	2,688,514	2,687,857	-656	-0.0	2,688,514	2,687,857	-656	-0.0	564
(3개)	직	요 셉 의 원	11,600,317	2,291,764	-9,308,553	-80.2	11,600,317	2,291,764	-9,308,553	-80.2	565
	직	희 망 의 집	227,827	236,324	8,497	3.7	227,827	236,324	8,497	3.7	567
푸 드 (1개)	수법	성 북 푸 드 마 켓	211,712	220,182	8,470	4.0	211,712	220,182	8,470	4.0	568

※ 고척동데이케어센터 : 세출 관 · 항 변동(총액변동 없음)

[구분보기]	수법: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수: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직: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직: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의장 유경춘] 본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지를 묻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청하다.

[제4호 의안인 2017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원 들어(이사 및 감사) 심의하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4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 및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에,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4호 의안인 2017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5호 의안 : 기금 사용 전환(안) 「호스피스 기금 및 노숙인 기금」 승인 요청의 건

[의장 유경춘] 제5호 의안인 기금 사용 전환(안) 「호스피스 기금 및 노숙인 기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정성환 상임이사가 설명해주기 바란다.

[상임이사 정성환] 제5호 의안인 기금 사용 전환(안) 「호스피스 기금 및 노숙인 기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1. 「호스피스」 기금 사용 전환(안)

▶ 「호스피스」 기금 개요

- 1) 1990년 3월 2일 호스피스부를 신설하고 가정호스피스 사업을 실시함. 같은 해 제1회 가정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1991년 3월부터는 가정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임종환자 및 가족들의 가정에 파견하여 인간 존엄성에 바탕하여 사랑으로 보살핌으로써 환자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는 등 질 높은 봉사활동을 실시함.
- 2) 이후, 가정 호스피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센터’ 를 마련하고자 매실원액, 비누 등을 판매하여 센터 건립 기금을 마련하였으나 이 기금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센터 설립자체가 무산됨.

▶ 추진 과정

- 1) 1999년 가정호스피스 후원금 보고서 이후 우리은행(구 한빛/454-000754-13-029) 계좌 개설됨.

날짜	입금	출금	내역	잔액
1999년 9월 30일	21,423,560원			21,423,560원
2001년 3월 26일		22,000,000원		218,734원
2002년 8월 14일	32,466,896원		최귀령(은총의샘터)	36,447,304원
2003년 7월 10일		30,000,000원	정기예금	3,737,357원
2005년 10월 18일		2,140,000원		184,057원
2009년 12월 30일	2,000,000원		법인 입금	2,107,761원
2009년 12월 30일		2,000,000원	2007.09.14.음악회 2007.11.12.협의회 기관방문	107,761원

- 2) 2003년 7월, 3천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예치하기 시작함.
- 3) 2016년 위의 우리은행(구 한빛/454-000754-13-029) 입출금 계좌를 해지하여 기금에 합산하여 예치함. (잔액: 108,003원)

▶ 현황 : 정기예금(우리은행 1020-221-398870)

- 1) 금액 : 53,251,100원
- 2) 기금 형성 과정

연번	개설일	금액	계좌번호	내용
①	2003년 7월 10일	30,000,000원		2003년 기금
②	2015년 1월 15일	52,172,052원	1020-316-366089	①+2003~2015년까지 이자(₩22,172,052)
③	2016년 1월 15일	53,251,100원	1020-221-398870	②+이자(₩971,045) +입출금통장해지잔액(₩108,003)
⑩	2017년 1월 16일	54,007,575원	예정	③+이자(₩756,475)

▶ 「노숙인」 기금 목적

서울역 근처의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김운회 주교님 모친께서 서울역 인근 상가를 기증함. 이 상가를 급식소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기금 모금을 함.

▶ 추진 방법

평화방송 및 카리타스 합창단 연주회를 통한 모금, 자동이체 후원자 모집 등

▶ 기금 현황

1) 노숙인 입출금 통장(우리/1005-801-024806)

(1) 개설일: 2006년 2월 3일

(2) 금 액: 5,528,574원(2017년 1월 12일 현재)

후원자 2명(김미형, 박순용) 입금이 계속되고 있음.(2016년 입금액 40,000원)

2) 노숙인 정기예금(우리은행 1020-721-402953)

(1) 금 액: 52,848,603원

(2) 기금 형성 과정

연번	개설일	금 액	계좌번호	내 용
①	2007년 10월 19일	40,000,000원		2006년 모금액(음악회 20,761천원 포함)
②	2008년 7월 31일	46,000,000원	1022-700-095258	①+ 2007년 모금액(하태욱 3,000천원 포함)
③	2009년 8월 4일	47,827,776원	1020-606-988929	②+이자
④	2010년 8월 10일	46,000,000원	1020-408-808436	이자 및 차액은 모금 통장에 입금
⑤	2011년 12월 30일	47,726,609원	1020-111-140125	④+이자

(3) 기타 : 기금 형성과정에 노숙인복지협의회 및 우리집공동체 前원장 하태욱 등이 관여함.

[의장 유경춘] 본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지를 묻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청하다.

[제5호 의안인 기금 사용 전환(안) 「호스피스 기금 및 노숙인 기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원들이(이사 및 감사) 심의하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5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 및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에,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5호 의안인 기금 사용 전환(안) 「호스피스 기금 및 노숙인 기금」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6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추진 승인 요청의 건

[의장 유경춘] 제6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추진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정성환 상임이사가 설명해주기 바란다.

[상임이사 정성환] 제6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추진 승인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법인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추진]

분야	시설명	소재지	임면 사항				비고
			면		임		
			발령일	성명	발령일	성명	
노인	[직영] 행운동성당 데이케어센터	관악구	2016.12.31	김향숙	2017.01.01	장영일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
여성	[직영] 성가정입양원	성북구	2017.01.31	Sr.남혜경	2017.02.01	Sr.윤미숙	소속 수녀회 인사 발령 (예수성심 전교수녀회)
여성	[직영] 마음자리	강서구	2017.01.31	Sr.윤미숙	2017.02.01	Sr.안현주	상동
의료	[직영] 요셉의원	영등포구	2017.02.13	Fr.이문주	2017.02.14	Fr.조해봉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인사발령
노인	[직영] 강일성모 노인요양원	강동구	2017.02.13	Fr.김경하	2017.02.14	Fr.이동원	상동
영유아	[수탁] 구립성모 어린이집(논현)	강남구	2017.02.28	Sr.이옥한	2017.03.01	Sr.이인숙	소속 수녀회 인사 발령 (예수의 까리파스수녀회)
노인	[직영] 갈현동성당 데이케어센터	은평구	2017.02.28	Sr.최옥자	2017.03.01	Sr.박영미	소속 수녀회 인사 발령 (사랑의 씨튼 수녀회)

[의장 유경춘] 본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지를 묻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청하다.

[제6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추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원들이(이사 및 감사) 심의하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6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 및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

에,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6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인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7호 의안 : 법인 산하 수탁 「시립고덕양로원, 시립평화로운집」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의장 유경춘]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 「시립고덕양로원, 시립평화로운집」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성환 상임이사가 설명해주기 바란다.

[상임이사 정성환]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 「시립고덕양로원, 시립평화로운집」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본회 이사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운영위원 손창배 노무사의 법률 자문을 득하여 수정·보완을 완료함.)

1	법인 산하 수탁 「시립 고덕양로원」 운영규정 개정(안)
	<p>▣ 개정 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규정 총칙 제7조(운영방침)와 제8조(기능과 역할)의 세부내용을 보완함 2.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거나 항목을 신설 하고자 함. <p>▣ 주요개정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규정(총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운영방침) : 시설운영의 이념을 명확히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관리지침의 근거를 마련. 2) 제8조(기능과 역할) : 입소어르신의 사회적기능 유지 및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 함. 2. 인사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육아휴직) 제1항 3호 삭제 :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중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사유를 삭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법시행령 제10조 반영) 2) 제36조(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를 반영하여 신설 하고자 함. 3) 제37조(가족돌봄휴직)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반영하여 신설 하고자 함. 3. 복무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연차유급휴가) 변경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정함.

- 2) 제30조(산전후휴가 등) 변경 :
-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여 제1항의 내용 중 산후 45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산후 45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다만,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을 60일 이상 부여한다)로, 최초 60일을 최초 60일(다자녀 임신의 경우에는 75일)로 다자녀 경우의 산전후휴가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2)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함.
- 3) 제31조(임신 중인 직원의 보호) 신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반영하여 신설하고자 함.
- 4) 제32조(육아시간) 신설 : 근로기준법 제75조를 반영하여 신설하고자 함.
- 5) 제33조(사용금지) 신설: 근로기준법 제65조를 반영하여 신설하고자 함.
- 6) 제32조(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의하여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이하 p.17~p.22 시립고덕양로원 운영규정 개정(안) 대비표 참조]

법인 산하·수탁 「시립 고덕양로원」 운영규정 개정(안)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변경사유
운영 규정 (총칙)	제7조(운영방침) 시설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제7조(운영방침) 시설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 이념 : 저소득층 어르신을 수용 보호하고 이에 따른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때 입소한 어르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하여 입소한 어르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며,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다. ②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관리지침”에 의한다.	〈세부사항 기재〉
	제8조(기능과 역할) 시설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8조(기능과 역할) 시설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입소어르신에게 급식, 주거,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사항 기재〉
	제35조(육아휴직) ① 시설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	제35조(육아휴직) ① 시설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내용수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p>인사 규정</p>	<p>(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시설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직원 3.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직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② 육아휴직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p> <p>③ 시설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 휴직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시설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p>	<p>"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호는 변동없음</p> <p>3. 삭제</p> <p>②~④ 변동없음</p>	<p>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반영</p>
<p>인사 규정</p>	<p>신 설</p>	<p>제36조(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① 시설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련법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전항 단서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p>	<p><항목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반영</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한다.</p> <p>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p> <p>⑤ 시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p> <p>⑥ 시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인사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7조(가족돌봄휴직) ① 시설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락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등 관련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전항 단서에 의거 가족돌봄휴직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되 별도의 조치를 배려할 수 있다.</p> <p>③ 가족돌봄휴직기간은 연간 90일을 한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1회에 분할하여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되도록 한다.</p> <p>④ 시설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복직 시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한다.</p> <p>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항목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p>

<p>복무 규정</p>	<p>제25조(연차유급휴가)</p> <p>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p> <p>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이 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뺀다.</p> <p>③ 제2항의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최초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다.</p> <p>④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그 휴가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p> <p>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최소한 휴가 사용 7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⑥ 법인 인사이동에 따른 휴가일수는 근무의 연속으로 인정한다.</p>	<p>제25조(연차유급휴가)</p> <p>① 시설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p> <p>② 시설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p> <p>③ 시설은 직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p> <p>④~⑥ 변동없음</p>	<p><내용수정> 근로기준법 제60조</p>
<p>복무 규정</p>	<p>제30조(산전후휴가 등)</p> <p>① 시설은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게 9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히 산후 45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60일은 시설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p> <p>② 시설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시간 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여</p>	<p>제30조(산전후휴가 등)</p> <p>① 시설은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게 9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히 산후 45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다만,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을 60일 이상 부여한다). 이 경우 최초 60일(다자녀 임신의 경우에는</p>	<p><내용수정> 근로기준법 제74조</p>

	<p>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이한 근무로 전환시켜야 한다.</p> <p>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p> <p>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또는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또는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p>	<p>75일)은 시설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p> <p>② 변동없음</p> <p>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p> <p>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p>	<p>〈내용수정〉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3항</p>
<p>복무 규정</p>	<p>신 설</p>	<p>제31조(임신 중인 직원의 보호) 시설은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p> <p>1.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 한다.</p> <p>2. 시설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동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p> <p>3. 제2호의 신청을 하려는 여성 직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설에 제출해야 한다.</p>	<p>〈항목신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p>

복무 규정		<p>4. 임신 중인 여성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시설은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시킨다.</p> <p>5. 시설은 임신부보호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의 종료 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p>	
	신 설	제32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항목신설〉 근로기준법 제75조
	신 설	<p>제33조(사용금지) ① 시설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p> <p>② 시설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의 정함에 따른다.</p>	〈항목신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32조(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설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원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임신 7월까지의 매 2월에 1회, 임신 8~9월인 경우 매월에 1회,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까지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p>제36조(태아검진시간의허용) ① 시설은 임신한 여성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한다.</p> <p>1. 임신 7월까지의 매 2월에 1회</p> <p>2. 임신 8월에서 9월까지의 매 1월에 1회</p> <p>3.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p> <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한다.</p>	〈내용수정〉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2

법인 산하 수탁 「시립 평화로운집」 운영규정 개정(안)

▣ 개정 사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며, 서울시 음부즈만 감사 및 은평구청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인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회의 명칭을 지적 받아 이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1. 인사규정

- 1)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 구성 : 현재 인사위원 구성이 내부인사위원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외부인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인사위원을 재구성하고자 함.
- 2) 제6장 휴직 제35조 육아휴직 : 현재 육아휴직이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하고자 함.

2. 복무규정

- 1) 제4장 휴일 및 휴가 제31조 배우자 출산휴가 :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3일의 휴가에서 최고 5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 3일, 무급휴가 2일을 준대로 변경 하고자 함.

3.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1) 제4조 회의 : 운영위원회 회의 명칭을 정기회의에서 분기별1회 회의로 변경하고자 함.

[이하 p.23~p.24 시립평화로운집 운영규정 개정(안) 대비표 참조]

법인 산하 수탁 「시립 평화로운집」 운영규정 개정(안)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변경사유
인사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 3인내지 5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시설장 2. 위 원 : 중간관리자급 직원 중 시설장이 위촉한 2인 내지 4인 이내 3. 간 사 : 시설장이 위원 중 위촉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 8인내지 5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시설장 2. 위원 : 중간관리자급 직원 중 시설장이 위촉한 1인 내지 3인과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1인 3. 간 사 : 시설장이 위원 중 위촉	2016년 서울시 음부즈만 감사시 지적사항에 따라 구성원 변경
	제6장 휴직 제35조 육아휴직 ① 시설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휴직 제35조 육아휴직 ① 시설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개정 2014.1.14.)에 따라 내용 변경

<p>복무규정</p>	<p>제4장 휴일 및 휴가 제31조 배우자 출산휴가 시설은 남성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준다. 다만,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p>	<p>제4장 휴일 및 휴가 제31조 배우자 출산휴가 시설은 남성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고 5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 3일, 무급휴가 2일을 준다. 다만,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p>	<p>법률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개정2012.2.1.)에 따라 내용 변경</p>
<p>운영위원회 운영규정</p>	<p>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p>	<p>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된다. 1. 분기별 1회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p>	<p>2016년 하반기 은평구청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에 따라 내용 변경</p>

[의장 유경춘] 본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지를 묻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청하다.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 「시립고덕양로원, 시립평화로운집」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원들이(이사 및 감사) 심의하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7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 및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에,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 「시립고덕양로원, 시립평화로운집」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8호 의안 : 미소금융중앙재단 복지사업자 사업계획(안)에 대한 승인 요청의 건

[의장 유경춘] 제8호 의안인 미소금융중앙재단 복지사업자 사업계획(안)에 대한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정성환 상임이사가 설명해주기 바란다.

[상임이사 정성환] 제8호 의안은 미소금융중앙재단 복지사업자 사업계획(안)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본 내용은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2014년 6월 미소금융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2014년~ 2016년 현재까지 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매년 미소금

음증양재단 측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야만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측에 “2017년도 창업 지원사업” 을 신청하고자 본 의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드린다.

사업명	
북한이탈주민 및 취약계층의 창업 자립지원	
분 야	저소득층의 창업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사 업 기 간	매년 미소금융중앙재단 측과 약정체결 후 사업진행 (2014년~2019년 (5년))
지 원 금 액 (2017년)	일금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
세 부 세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용도 및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자금 : 예비창업자(최대 5,000만원 내 지원-임차보증금 3,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 2. 경영개선자금 : 기존사업자(최대 3,000만원 내 지원-운영자금 2,000만원, 2차 운영자금 1,000만원) ▶ 대출기간(총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환기간: 4년 6개월 2. 거치기간: 6개월 ▶ 적용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리: 연3% 2. 지연금리: 연7%(기존금리 3% 포함하여 7% 적용) ▶ 상환방법 : 거치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월납

[의장 유경춘] 본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지를 묻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청하다.

[제8호 의안은 미소금융중앙재단 복지사업자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원들이(이사 및 감사) 심의하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8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 및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에,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8호 의안은 미소금융중앙재단 복지사업자 사업계획(안)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9호 의안 : 법인 임원 변경(안) 승인의 건

[의장 유경춘] 제9호 의안인 법인 임원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성환 상임이사가 설명해주기 바란다.

[상임이사 정성환] 제9호 의안인 법인 임원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1. 이사 퇴임에 따른 선임 이사 변경(안) 건

퇴임 이사 성명	이사 임기 만료일	비고
Fr.이원규	2017년 3월 15일 [최초 선임일] 2014년 3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장 (1992.02.~1996.10.) ■ 구립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 천주교 수유동성당 주임 겸 6지구장 역임 등 ■ 2017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인사 발령: 은퇴

신임 이사 성명	최초 선임 예정일	약 력
Fr 황 경 원	2017년 3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일동성당 주임 신부 ■ 現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국장 ■ 이사 임기 예정 : 2017.03.15.~ 향후 3년

2.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중임 건

이사 성명	임기만료일	약 력
오 혜 경	2017년 5월 17일 [최초 선임일] 2005년 5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복지위원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심의위원 ■ University of Pennsylvania DSA박사 (사회사업전공)

※ 근거 규정
 본 회 「정관」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의장 유경춘] 본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지를 묻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청하다.

[제9호 의안인 법인 임원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원들이(이사 및 감사) 심의하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9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 및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에,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9호 의안인 법인 임원 변경(안)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보고사항 및 기타토의사항

기타 보고·토의사항으로는 본 법인사무국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팀, 교육홍보팀, 자원개발팀, 재무행정팀, 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2017년 1/4분기 진행업무보고와 2017년 2/4분기 예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다.

또한, 임원진의 기타 의견으로, 차기 임시이사회에서는 제8호 의안이었던 미소금융중앙재단 복지사업자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그간의 운영된 사업현황에 대한 보고 등의 세부자료를 준비하여 추가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각 팀별 진행업무보고 중에서 사회복지팀의 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대상 학생들에게 정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므로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제3호 의안에서 법인 및 각 시설들에서 사업총평가를 공통양식에 맞추어 잘 작성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더불어 차기년도의 사업총평가서 작성시 그 구성을 현 내용과 더불어 별도의 1쪽 분량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총평가와 계승발전할 점, 쇄신할 점과 새롭게 시도해야할 점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해 준다면 더욱 훌륭한 사업총평가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및 기타토의,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다.]

의장은 금번 2017년 총 제166차 정기이사회에 상정된 총9개 의안, [제1호] 의안인 감사보고서 승인 요청 건,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 및 기본재산목록 변경(안) 승인 요청 건, [제3호] 의안인 2016년 법인 및 직영수탁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 건, [제4호] 의안인 2017년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 [제5호] 의안인, 기금사용전환(안)-호스피스 및 노숙인 기금-승인 요청 건, [제6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안) 추인 승인 요청 건, [제7호] 법인 산하 수탁시설 「시립고덕양로원, 시립평화로운집」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 [제8호] 의안인 미소금융재단 복지사업자 사업계획(안) 승인 요청 건, [제9호] 의안인 법인 임원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임원진의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보고사항 및 기타 토의사항을 마친 후,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마침기도로 영광송을 바치고 18시 30분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여 보관하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유 경



상임이사

정 성



이 사

심 점



이 사

오 혜



이 사

김 진



이 사

정 태



이 사

전 재



이 사

김 명 근



감 사

김 기

